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472
------	------

2026.03.1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9일, 김길영 의원 등 27명

나.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6.3.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효원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 과 ‘청년 창업자’ 의 정의를 관련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규정하고 인용 조문의 현행화를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청년’ 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에 따라 규정함(안 제2조제1호)

2. ‘청년 창업자’의 정의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규정함(안 제2조제2호)
3. 안 제2조 정의 규정을 수정함에 따라 반복되는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5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범위에 대한 인용 법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발의됨.

2. 개정조례안의 검토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9년에 제정되었음.
- 동 조례는 제정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근거하여 ‘청년’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신사업 창출과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창업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같은 법이 지난 2021년 12월 2일 개정되면서 청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같은 법 제2조 제11호와 제12호에 새롭게 명시되었고 이와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는 삭제되었음.
- 이에 이미 삭제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를 인용한 현행 조례 제2조의 청년에 대한 정의는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제2조의 정의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하겠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의 청년 정의 규정 현황 >

	종전 법령 규정	현재 법률 규정
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② 중소기업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u> 를 우대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생략)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u>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u> 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u>39세 이하의 개인</u> 등을 말한다.
시행령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u>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u> 를 말한다.	제5조의4<삭제>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같은 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2조의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한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1호에 ‘청년’에 대한 규정을, 제2호에 ‘청년 창업자’에 대한 규정을 각각 명시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다. <신설>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을 경영하는 자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예비청년 창업자를 말한다.

- 먼저 안 제2조 제1호는 ‘청년’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을 인용하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제2호는 ‘청년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와 제12호를 인용하여 청년창업기업을 경영하는 39세 이하 경영자나 예비청년창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안 제2조제1호는 ‘청년’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동 조례의 제정 취지가 청년 창업자를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있고 이러한 청년 창업자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제2호에 별도로 규정하면서 청년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제1호와 같이 청년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임.
- 특히 안 제2조제1호는 청년에 대한 정의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은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안 제2조제1호가 청년 연령의 하한선을 규정한 이유는 불분명하나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투명하고 더욱이 같은 조 제2호의 청년 창업자와 예비청년창업자의 연령에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안 제2조 제1호와 제2호가 서로 상충하므로 안 제2조 제1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p>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2. “청년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을 경영하는 자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예비청년 창업자를 말한다.</p> <p>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 창업자----- ----- -----.</p> <p>② (현행과 같음)</p>	<p>다음과 같다.</p> <p>1. “청년창업자”란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대표자를 말한다.</p> <p>2. “예비청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	--

- 아울러 동 조례는 상위 법령이 2021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인용 조문 불일치’ 상태로 방치되었는바, 서울시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살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

가. 수정이유

- 안 제2조제1호의 ‘청년’에 대한 정의가 안 제2조제2호의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의 연령 범위와 상충되므로 ‘청년’의 정의를 삭제하고, ‘청년창업자’와 ‘예비청년창업자’에 관한 정의를 법령에 따라 규정함(안 제2조).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청년창업자’와 ‘예비청년창업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1호, 제2호).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72
----------	---------

제안년월일 : 2026년 3월 10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제1호의 ‘청년’에 대한 정의가 안 제2조제2호의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의 연령 범위와 상충되므로 ‘청년’의 정의를 삭제하고, ‘청년창업자’와 ‘예비청년창업자’에 관한 정의를 법령에 따라 규정함(안 제2조).

2. 수정의 주요 내용

- ‘청년창업자’와 ‘예비청년창업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대표자를 말한다.
2. “예비청년창업자”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창업자”를 “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5조의4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2. “청년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 기업을 경영하는 자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예비청년창업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창업자”란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 11호에 따른 청년창업 기업 대표자를 말한다.</p> <p>2. “예비청년창업자”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p> <p>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p> <p>① ----- 창업자-----</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p> <p>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예비 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p> <p>-----</p> <p>-----</p> <p>②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대표자를 말한다.
2. “예비청년창업자”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창업자”를 “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신 설></p>	<p>1. “청년창업자”란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대표자를 말한다.</p>
<p><신 설></p>	<p>2. “예비청년창업자”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p> <p>② (현행과 같음)</p>